

2011년 8월 제24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영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285-0184

권두언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아주대학교 이철기 교수

연구특집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

경찰 조직문화의 진단과 활성화 전략 치안정책연구소 이상수 연구관

김정일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송경호 연구관

치안정책 동향

일본의 '수사기법, 신문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회'의 중간보고를 접하고 경북지방경찰청
김천경찰서 김 혁 경감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아주대학교 이철기 교수



최 근의 한반도 기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반도의 기후처럼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는 곳이 아마도 경찰조직이 아닌가 싶다. 2010년 2월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범조일원화 등과 함께 논의되어 온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2011년 6월에 현실화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일선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얻지 못해 뒤가 개운치 못했던 것을 법의 개정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것이다.

2011년 초에 국회 사개특위 및 경찰과 검찰의 대표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때,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경찰과 검찰의 권력 다툼 정도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자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과행적인 행정행위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전적으로 국민을 위한 고민이지 각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의적 관점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요소는 다분히 감소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독자적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마냥 즐

거워 할 일 만은 아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고뇌하여야 한다. 조직 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비단 수사경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관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한 명이 경찰관 열 명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중 9명에게는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경찰관이 기분 나쁜 서비스를 했을 때, 그 국민의 경찰서비스 평가점수는 제로(zero)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 개개인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 향상되고 다가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가장 근접한 교통경찰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의 교통과장을 소집하여 '교통경찰의 국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나온 국민대표들의 발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 통사고 장애인 협회장, 버스·택시 기사 대표, 녹색어머니회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아직도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교통경찰에 대해 쓴소리를 하였다. 그 의견들을 정리하면 ①불친절, ②권위적 모습, ③불공평한 교통단속, ④전문성이 결여된 사고조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 전체인력의 10%인 교통경찰이 전체민원의 5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발전하지 못하고 고인 물이 되어 썩을 것이다. 물론 전체의 경찰관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의견이 국민대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면 없는 소리를 일부러 지어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경찰관들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 공복(公僕)이라고도 표현한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건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이건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의 의견이 위와 같다면 아직까지 경찰관 특히, 교통경찰관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 친절하지 못한 언어 표현 및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야 한다. 물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인력과 장비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 또 얼마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뇌부에서 가장 먼저 각성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일선서에서 국민의 전체 민원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이 그간 미흡했기 때문이다.

교통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2010년 기준 우

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약 2.6명이다. OECD 평균인 1.25명(2009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2.6명은 1990년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20년 정도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다. 교통사고분야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병행하여 중기플랜, 장기청사진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연구▶기획▶운영▶결과가 피드백으로 연결되는 관리 사이클(management cycle)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학·관의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최신기법과 첨단기술의 검토 및 적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부분은 타 부서에 비하여, 전문성이 가장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통의 양대축인 국토해양부의 연구조직 및 인력구조를 비교해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경찰수뇌부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부모님을 대하듯 국민을 모셔야 한다. 더 많이 공부하여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져야 한다.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더욱 더 모범을 보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국민중심의 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세계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로서 영국경찰을 꼽는다. 영국경찰도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까지 다양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심각한 고민의 시간속에 오늘의 명예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도 앞으로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영국경찰 못지않은 존경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김 학 신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개 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실종아동은 2004년 4,066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사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문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1991. 3. 개구리소년(5명)의 실종사건, 2003. 11 포천 여중생 실종사건, 2004. 1 부천초등 학생 2명의 실종사건 등 이러한 실종사건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 「실종아동법」을 제정하였지만, 동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2007. 3. 제주에서 9세 영아 실종 살해사건, 동년 12월에 안양 초등 학생 실종 살해 사건 등 아동의 실종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및 국내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종아동 실태와 수사

현재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14세 미만인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실종’으로,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은 ‘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두 경우를 합쳐 통상 ‘행방불명자’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행방불명자의 수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5만9739건, 2007년 6만5003건,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3만5439건이 발생했다. 연간 6만 건으로 감안해도 하루 평균 164명이

어떤 이유에서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실종아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8년에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신고건수는 정상아동(14세 미만)이 9,470명으로 2007년 대비 10.1%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유괴·실종경보시스템 매체의 확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시행 등 치안시스템 내실화로 전체 ‘실종아동등’의 발견율이 매년 증가·향상되고 있다. 이후 2009년 실종아동등 신고건수는 9,240건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2.4%)하였다. 2010. 5 현재 실종아동은 4,162명으로 이 중에서 4,104명은 부모에게 인도되었으나, 58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현재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는 앰버경보(Amber Alert)시스템,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전담 수사 부서 등을 활용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첫째, 앰버경보시스템이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린이 유괴·납치사건에 대한 미국 내의 비상 경보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의 앰버경보 시스템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7. 4 경찰청,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괴 및 실종아동 발생시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의 전광판(4,200개)과 교통방송을 통해 아동의 유괴 및 실종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앰버경고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과학 수사센터의 최신 컴퓨터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연령 변환 얼굴을 활용하는 실종유괴아동의 앰버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둘째,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으로 이는 FBI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실종자 관련 자료를 발생 시간, 장소 및 신체 영구 특징, 병력 등을 정밀 분석, 추적해서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수사기법이며, 경찰청에서는 2008. 3. 부터 실종자에 대한 신고, 접수 전산망을 개선하여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셋째,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으로 이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정해서 그려내는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경찰은 미국의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재구성하여 실종아동을 찾고 있다.

넷째, 실종아동의 전담 수사 부서의 활용으로 미국의 FBI는 실종된 아동을 수사하기 위해 아동대상범죄 수사전담반(CAC)과 아동납치신속 대응팀(CARD Team)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2008. 4.부터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① 실종아동 수사시 관련 법·제도의 미비: 현 실종아동법과 아동복지법, 소년법,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이 제정의 취지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동의 연령, 명칭, 범위 등 제도적인 통일성을 갖추어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이 납치, 유괴 시 용의자에 대한 통신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실종 아동 관련 범죄 자료와 연구의 부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실종의 유형을 구별하고 더불어 유사한 실종 범죄 사건의 정보와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 연구하여, 이를 전산으로 시스템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종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프로파

일러들이 축적한 범죄자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종으로 인한 살인, 성폭행, 상해 등의 제2차 범죄를 예방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③경찰 수사 인력의 부족 ④실종사건 수사에 필요한 협조의 미비 ⑤ DNA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

대책방안

①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의 적극적인 수색: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시설들은 신고된 4,022개와 미신고된 98개를 합쳐서 모두 4,120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 98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하다. ② 민·관의 원활한 협조·공조체제 구축: 미국의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는 연방수사국, 법무부, 국무부, 청소년 비행방지센터 등 다수 정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실종아동을 찾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과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사이에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사건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이외에도 ③엠버 경보 시스템의 활성화 ④실종아동을 위한 민간 조사관제 도입 ⑤아동관련 주변 시설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 ⑥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아동 찾기 ⑦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 ⑧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이 대표적인 대책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맺은말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의 70~80%는 직장과 사업을 팽개치고 전국을 떠돌며 찾아 헤매고, 고통속에서 술에 의존하고, 책임 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의 싸움으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고 한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파괴되어가는 실종된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게 된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경찰 조직문화의 진단과 활성화 전략

이 상 수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경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결집시키고, 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찰 특유의 생산적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 전반의 조직문화는 업무에 있어 권위적·수동적이며, 상하 조직구성원들 간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 조직문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조직문화는 일반적으로 관료적·복종적이고 경직적·위계중심적 문화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 저하 및 부서간 협조 결여, 책임회피 및 책임 전가 등의 비합리적 조직문화라는 비판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 비전 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욕 안먹는 경찰, 인정받는 경찰, 사랑받는 경찰, 존경받는 경찰’이란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찢어지고 갈라져있는 현재의 조직내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구성원들의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촉발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결집시키는 경찰 고유의 조직문화 창출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전략이나 사업 환경이 좋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조직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자원과 노력의 손실만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치안성과 제고’ 보다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잘 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바람직한 경찰의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 조직문화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

경찰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경찰 조직문화의 정기적 진단 실시

경찰 조직문화의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변화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조직문화는 보이지 않고,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그 만큼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문화를 어떻게 정립·유지·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조직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여부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변화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찰 조직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지속적인 문화변동 노력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전이(轉移)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진단(organizational culture diagnosis)을 통해 현재 상태와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통해 조직문화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방법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조직 변화를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조직문화의 변화가 함께 수반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직진단의 하위구성분야 또는 독립적인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행 조직기능과 수행과업을 분석하여 조직기능 재편과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요청된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조직문화의 특성, 인사·복지 등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직문화 분석 목적에 따른 직원들의 인식도 등을 파악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준거기준 도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경찰 조직문화의 단계별 진단 절차

경찰 조직문화의 단계별 진단은 경찰조직의 공유가치(share value) 도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형 개발 및 진단 실시,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계획 수립, 변화 실행,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성과를 결정한다.

첫째, 경찰청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핵심가치 도출을 위해 워크숍,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찰의 공유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조직 내부 분석에서 지휘부와 직원들과의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조직이 나아가갈 방향과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문화 진단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할 사항은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화를 실현하는 주체인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조직이 추구해야 할 공유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경찰비전 2015'에서 '업(業)과 혼(魂)'에 기초한 경찰공유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경찰 정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발상은 매우 참신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체계적인 경찰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과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경찰의 고유한 조직문화 진단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09년에 시험 개발한 경찰조직문화 진단지수가 있다고는 하나 평가모형이 과학적·체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된 것이 아니기에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일반화를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가 2008년 전면적인 평가지표의 개선과 가치지 적용방법의 변경 등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평가모형의 완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고유한 평가모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문화 수준을 알기 쉬운 지수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모형의 정립을 토대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경찰조직관리 개선과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조직문화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조직문화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성과와도 직결된다. 그러자면 효과적인 조직문화 관리가 요청되며, 조직 문화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지향하는 문화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직 문화 진단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 즉, 조직 문화 진단 틀 구축과 정기적 진단 실시, 그리고 진단 결과의 환류를 통해 성과지향적 문화와 최적의 성과달성 추진, 인적자원 관리 정책에의 반영, 조직발전 전략 실행을 위한 과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셋째, 현재 조직문화의 문제점이나 조직성과 및 경찰비전 달성의 방해요인은 무엇이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해 나가야 할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차이(gap)를 줄이기 위해 현재 부족한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미 '09년말에 발표된 '경찰비전 2015'에서 경찰의 미래 조직문화 구현방향으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이 전략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실행과제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경찰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 '업(業)과 혼(魂)'에 기초한 경찰공유가치 정립 및 확산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때 경찰조직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직문화 설문조사 설계→ 조직문화 진단→ 조직문화 핵심 원인과 문제점 분석을 실시해 구체성과 심층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 문화와 바람직한 미래 조직문화 간의 차이를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 실행 단계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직문화 혁신은 전체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이 진단에 기반해 조직문화 혁신의 마스터플랜과 조직 활성화 방안 수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의식수준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진단, 그 원인을 분석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로의 이전(移轉)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미래문화가치를 전 조직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실행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monitoring)·평가(evalu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찰비전 2015'에서 제시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관서별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계급별 또는 기능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식적 '정책협의기구'를 설립하고, 정기·수시, On-Off Line 모임을 통해 주요 치안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며, 일방적 지시 및 전달 위주에서 쌍방향 의사소통 위주로 회의 문화를 쇄신한다는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경찰 조직문화 진단 절차는 지속적 실행력이 성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위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김정일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양상과 경찰의 대응방안

송 경 호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들어가며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대남혁명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집요하게 추진하여 왔다. 더구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전선전술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에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대북 적대감 해소 및 안보의식 희석화에 혈안이 되어있다.

본 연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통일전선전술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 양상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전선전술의 개념 및 유형

통일전선(United Front)이란 '공동전선'을 뜻하며 동맹(alliance)이란 용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측면에서 통일전선전술은 기존 정치질서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신흥계급의 혁명과정에서 그 운동에 가담한 모든 계급을 총칭하는 의미(민족전선, 민주전선, 인민전선 등)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념 정의가 통일적이고 공식화되어 있지 못하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노동관계의 당의 지도 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은 정치적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남통일전선전술은 남한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혁명역량을 획득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며, 정권탈취를 위한 혁명준비기의 구체적 전술로 정의 할 수 있다. 통일전선에 관한 사상은

19세기 중엽 마르크스의 '다수자혁명론'에서 제기되었고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10월 혁명 과정에서 달성한 역사적 경험이 공산주의 혁명에 보급되면서 일반화되었다. 1922년 12월 5일 '전술에 관한 테제'가 채택되어 공식화되었고 1930년대 전반기에 전면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전술적 개념이 보다 확대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각국의 정세 변화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왔으며 모택동이 전개한 국공합작(1-2차) 경험이 통일전선전술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천적 유형으로는 '프롤레타리아통일전선전술'과 '반파쇼통일전선전술', '반제국주의민족해방통일전선전술'로 구분되며 전형적인 모델로는 서유럽의 반파쇼인민전선과 중국의 반제민족통일전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북한의 실정과 한반도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접목시킨 것이다.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추진 양상

대남통일전선전술의 목적은 혁명의 주력군을 육성함과 동시에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부대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반미구국통일전선 투쟁 강령을 제시할 것'과 '반미구국통일전선 운동에서 계급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갈 것'을 내세웠다. 북한은 하층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하면서 상층통일전선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협상제의', '연방제통일방안', '지하당구축' 등 남한혁명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시도하여 왔다. 전담부서로는 통일전선부 산하 6개부(정책담당, 교류담당, 회담담당, 연고자담당, 총련담당, 조직담당) 및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국전선」, 「조평통」 명의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제의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면서 한국 내 단독정부 수립반대, 상층부통일전선 형성, 유격활동 전개, 체제전복활동 강화, 좌익계 포섭 및 공산주의 합법 활동을 토대로 한 남노당 사업지도 강화, 합법 및 비합법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는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연석회의', '최고인민위원회와 국회합동회의개최', '남북연방제안' 등을 제의하고, 대남공작기구 개편,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 통혁당 창당 등 연고선 포섭공작과 상층통일전선 및 우회침투공작 강화 등 반제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으로 지하혁명역량 강화, 혁명기지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전민족회의', '대민족회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혁명여건 조성 및 복합적인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100인 연합회의',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민족대단결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범민련 창설',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현장'으로 규정하고, 외세배격 민족대단결의 기치 하에 북한 주도의 통일의를 천명하여 왔다.

2000년 이후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민족공조론'을 정치담론화하면서, '조국통일 3대현장'에 입각한 반외세, 반제, 반미자주화투쟁, 민족대단결 투쟁, 연방제통일투쟁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은 김일성시대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혁명역량 강화에 청년학생 및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도핵심공작을 통한 혁명지도부 강화, 한국 국민들의 의식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맺음말

향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그동안 축적하여 온 합법적 영역과 비합법적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부각시켜 한·미 관계 및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면서 각계각층을 통일전선에 결속하여 조직·사상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남한 혁명 여건 조성 및 전환적 계기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분쇄시켜 나가기 위해 서 보안경찰은 우리 내부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침투기회를 사전 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하당 세력 및 통일전선조직체를 와해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는 역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의 위해 또는 취약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경찰의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PSI](http://www.psi.go.k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학신 연구관

편집위원 : 김지환, 조은순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3-0181 (경비) 61-2474

• e-mail: webmaster@psi.go.kr

■ 일본의 치안동향

일본의 ‘수사수법, 신문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회’의 중간보고를 접하고

경감 김 혁
경북지방경찰청 김천경찰서

연구회의 목적

최근 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공소가 제기되어 무죄판결을 받거나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연달아 크게 보도되면서 수사과정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월, 학자(형사법·사회정책·심리학), 전(前)판·검사 및 변호사, 전(前)경찰간부, 저널리스트 등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수법, 신문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였다.

본 연구회는 전체 수사 구조 내에서 피의자신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재검토하고 수사수법을 고도화하여 안정된 치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4월 연구회 발족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표된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일본의 최근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피의자신문의 기능 및 문제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피의자신문은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진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 특히 조직범죄의 경우 공범이나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신문 과정에서 범행의 주관적 요소 또는 양형을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갱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일본의 형법범 검거건수 573,392건 중 피의자 신문이 사건의 주모자나 여죄 등을 특정하는 단서가 된 사례는 전체의 약42%에 해당하는 233,94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사본부가 차려진 중대사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피의자신문제도는 다음의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먼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신문 및 자백 획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신문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진상을 오인하여 무고한 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시성이 없는 취조실²⁾에서 행해진 신문이 진실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인권 침해의 우려도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신문의 가시화(可視化) 논의

가시화의 현황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신문의 가시화, 특히 피의자신문의 녹음·녹화 제도이다.

현재 일본의 경찰 및 검찰에서는 형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신문의 녹음·녹화제도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원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자백의 임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나 우리의 진술녹화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진술의 전 과정을 녹화하는 우리와 달리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소리 내어 읽고 열람시키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상황, 피의자가 임의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상황 등을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시화의 효과

중간보고서는 피의자신문의 가시화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먼저, 가시화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문과정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또한 신문의 임의성이 다투어졌을 때 재판원(우리의 배심원에 해당)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신문의 전 과정을 증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피고인으로 형사소추되어 무죄·재심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조실의 전면 가시화, 신문의 전(全)과정에 대한 녹음·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의자신문의 녹음·녹화가 실제적 진실발견 및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가시화가 피의자와 조사관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하여 수사의 장애를 초래하고 피의자의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보복을 두려워 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여 조직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수사관과의 신뢰문제는 카메라 촬영의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극복가능하며 조사기법을 고도화하여 피의자와 라포(rapport)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종래와 같이 밀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관계’는 ‘라포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을 대체할 수사수법에 관한 검토

본 연구회에서는 기존의 피의자신문의 개선 논의와 더불어 향후 피의자신문을 대체할 수사수법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주요 국가들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DNA 채취	실시여부	○ (일부범죄)	○ (일부범죄)	○ (일부범죄)	○ (일부범죄)
	강제채취	동의불요	거부사벌칙	영장필요	거부사벌칙
	피의자DNA수	562만 (2009년)	833만 (2009년)	67만 (2009년)	121만 (2009년)
통신 감청	실시여부	○	○	○	○
	영장발부건수	1,514 (2009년)	2,376 (2009년)	17,208 (2008년)	26,000 (2008년)
사범거래		○ (유죄답변)	○ (유죄답변)	○ (왕관증인)	○ (약물변죄등)
형사면책		○	○	×	×
합정수사·잠입수사		일부허용	일부허용	일부허용	일부허용

시사점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백 획득 위주의 수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결국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수사 등을 통한 증거수집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PSI**

- 1) 2009년 수사본부 해결사건(살인·강도 살인등 살인이 관련되는 사건 가운데, 형사부장을 장으로 하는 수사 본부를 설치해 해결한 사건으로, 경찰청 형사국 수사제일과에서 보고를 받은 사건) 82건 중 피의자신문이 사체, 피해품, 범행도구 등의 증거발견 및 공범 검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는 49건에 달하고 있다.
- 2) 취조실이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밀실 형태의 취조실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작성주체에 따른 증거능력의 차이가 없다.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영식 경무관)는 2011년 7월 28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찰대학장(치안정감 손창완)의 축사에 이어 이동희 교수(경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는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 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오승진(단국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 진수명(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진교훈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이기수 경정(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참여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김영식)은 이번 세미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선진 수사구조 정착 및 국민의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하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연구소는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 인권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계 및 시민 등과 학문적·실무적 교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위촉

치안정책연구소는 2011년 6월 23일 치안정책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실별 해당 전문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선우 교수 등 20명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연구자문 위원은 연구실별 연구자문 및 경찰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시 긴급토론회 개최 등 경찰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치안정책 연구 발간 및 배포

치안정책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인 「치안정책연구」의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7월 11일 치안정책연구 제 25권 1호를 1,000부 발간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경찰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배포하였다. 연구논문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번	주 제	성 명
1	음주추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김택수
2	상습 주취 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김영식 김용민
3	경찰학전공 선택에 관한 연구	박상진 이재영
4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유지웅
5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조철욱
6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김윤영

책임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치안정책연구소는 6~7월중 총 3회의 연구관 책임 연구과제 발표회의를 개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연번	연구과제명	발표자
1	경찰경호발전에 관한 연구	이춘삼
2	경찰 실종아동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김학신
3	보험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책	정 옹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1년 6월 29일과 7월 1일에 경찰대학 경감기본교육과정(16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이상수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1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경찰발

전연구회 창립세미나를 주관하고, “경찰 조직문화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6월 1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였고, 7월 13일 행정안전부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후속조치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6~7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글짓기 대회” 심사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자문위원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공공혁신 전문월간지인 『공공정책21』 2011년 7월호에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범위와 사무분장의 합리적 방안”을 게재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11년 6월 22일(목)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제56기 신입관리자과정생’(행정고시합격자 361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라는 주제로 안보특강을 하였다. 6월 29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 주관 2011년 학술회의 ‘2012년 한국 정치일정과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에서 ‘북한의 정치심리전과 국내 정치과급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7월 15일(금) ‘경찰청 보안수사 선진화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보안수사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문활동을 한다.

◆ **김학신 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은 2011년 6월 3일(금)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초빙되어 성신여대 권현호 교수의 「WTO에서 콘텐츠무역의 법적쟁점: 중국 시청각서비스 사건의 평결과 이행을 중심으로」란 발표 주제에 토론을 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2011년 5월 9일 경찰청에서 주관한 “미래치안환경에 따른 경찰발전 전략연구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였다. 5월 13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외근과정을 대상으로 “무인단속 장비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7월 4일에는 도로교통

공단의 『2011년도 기본연구과제 중간심의회』에 참석하여 연구과제를 심의하였다, 7월 13일 용인 동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9개 안건을 심의하였고, 7월 27일 성남시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NRF) 등재지인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2호(통권119호)』에 “영상검지기를 이용한 좌회전 감응식 신호제어전략 개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정웅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11년 6월 17일 Indonesia Jakarta에서 개최된 한국무역보험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Money laundering risk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1년 6월 17일 단국대가 주최한 제36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에 있어서의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규제’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단국대 법학논총 제35권(2011.6)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ACTA와 비교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글 투고하여 게재하였고, 7월 28일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소 인사

<전출> **김원환 총경**은 2011년 7월 1일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으로 발령되었다.

<전입> **김덕한 총경**은 2011년 7월 1일 연구소 기획운영과장으로 발령되었고, **황규욱 총경**은 사회안전대책실 연구관, **김인옥 총경**은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이영조 총경**은 교통대책연구실 연구관으로 발령되었다.

한지수 경감은 2011년 7월 21일 연구소 사회안전대책 연구실로 업무지원 발령 되었다.

전원철, 김현숙은 2011년 8월 1일 일반계약직공무원(4호)로 임용되어, 범죄수사연구실, 수사구조개혁연구실로 각 발령되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